

「2024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서비스」 기술코칭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촉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술코칭 분야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위원의 코칭을 연계하여 이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 도모
- 수요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연계한 기술코칭 지원을 통하여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지원체계 확립

□ 공모개요

- 사업명: 2024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서비스 기술코칭
- 공고기간: 2024. 7.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분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반도체 및 반도체 융합 로봇,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 기술도입 희망기업
 - 2024년에 경기테크노파크의 중개로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완료 예정인 기업
 -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및 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및 기술 검증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업체당 최대 2백만 원

○ 지원제외 대상(사업공고일 기준)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시효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해당연도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에서 동일 과제로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 휴업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경우

□ 사업내용

○ 지원내용: 1:1 집중 코칭 지원

- 발명자 코칭 및 기술사업화 중장기 전략 수립 등
- 기술·제품·IP전략·투자유치 종합로드맵 구축
- 기업이 현재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기술)에 대한 정제화 도모 등

※ 지원금 교부형태가 아니라 기업과 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

○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협약형태: 경기테크노파크, 선정기업, 전문가 3자 협약

○ 전문가 자격요건: 경기테크노파크 전문가POOL에 등록된 자 또는 국가기술거래 플랫폼사업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자

1. 산업계

-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나.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다. 전문가자격증(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및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국가공인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학계: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공공기관 등)계

-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나.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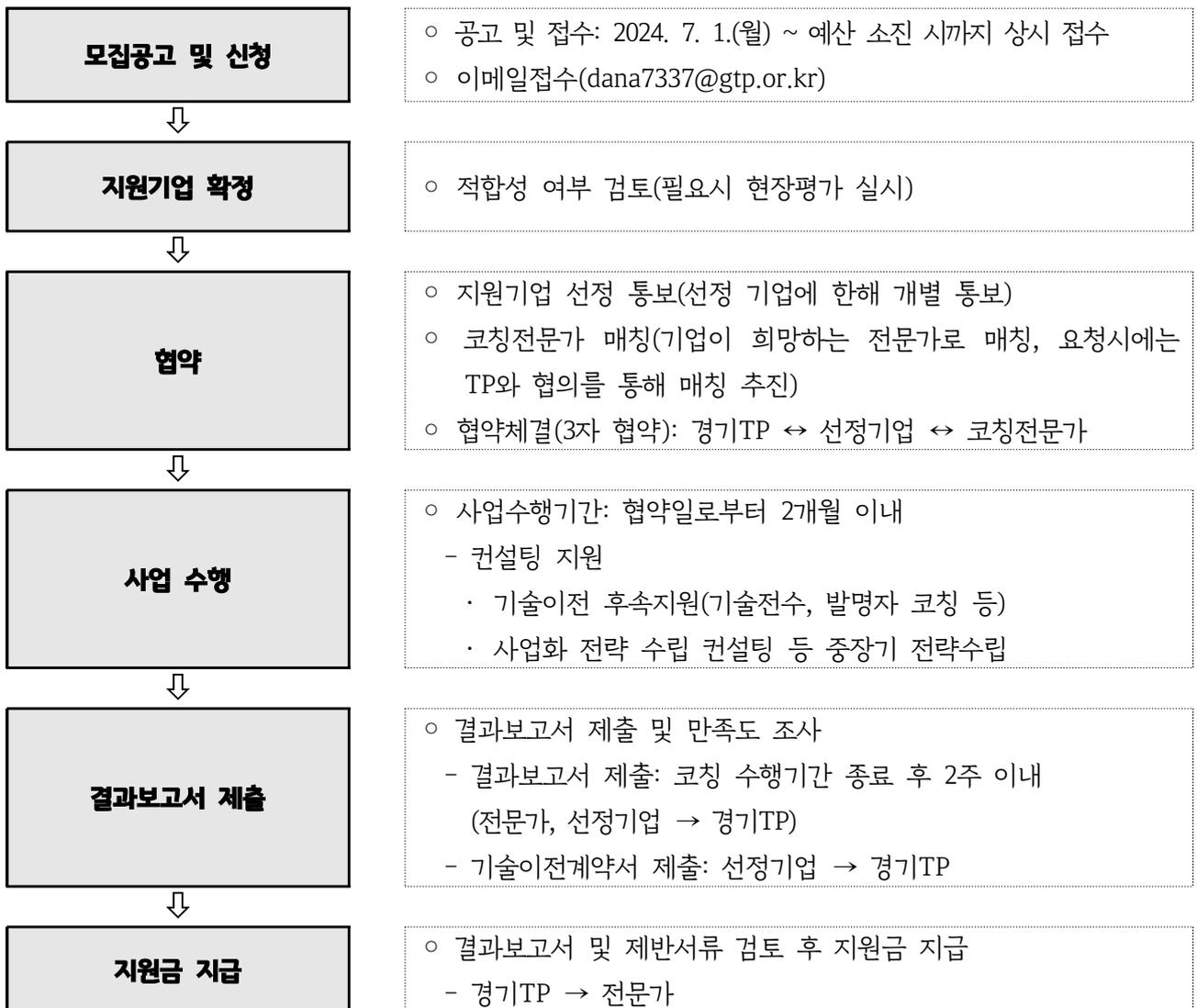
4.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 기관 및 사업화전문기관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유의사항

- 기술이전은 계약서상의 이전계약일자가 24년도로 작성되어야 함. 기술이전이 안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각종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향후 발견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2. 진행절차 및 신청방법

□ 진행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기업별로 절차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4. 7.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dana7337@gtp.or.kr)

※ 신청인(신청기업)은 본 공고, 신청서, 서식, 지침 등과 관련한 일체를 숙지하여야 하고, 신청서 제출 시 경기테크노파크는 신청인(신청기업)이 해당 모든 사항 일체를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서류누락·오기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신청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gtp.or.kr>) 모집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항 목	비 고
① 사업 지원신청서 1부	- 양식 붙임파일 참조
②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의향서 1부	- 사업신청 전에 기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술이전 계약서 첨부, 체결 전인 경우에는 기술이전 의향서 첨부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양식 붙임파일 참조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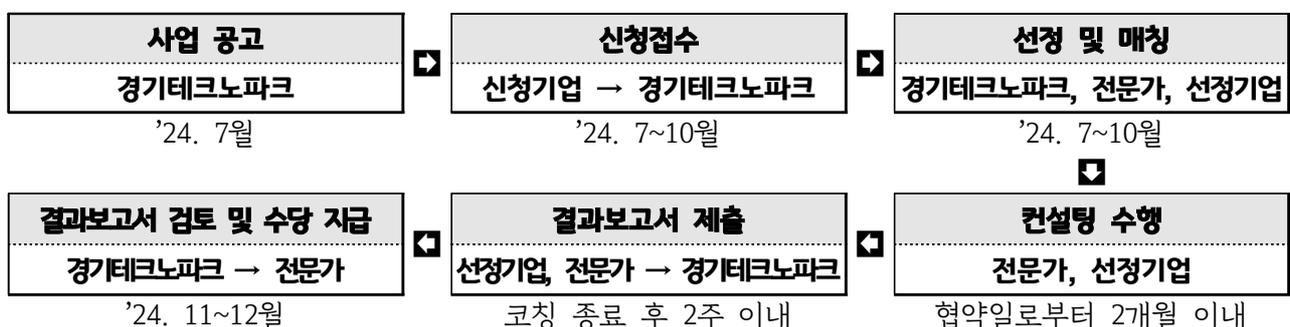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접수처)
김단아 주임연구원	031-500-3039	dana7337@gtp.or.kr

5.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 기술이전: 개발의 결과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기술형태: 지식재산권 및 know-how 등
- 기술이전 종류

기술이전 형태		내용
기술매매 (양도양수)		매매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완료
실시권 허여 (라이선스)	전용 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통상 실시권	기술공급자와 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 이전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된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M&A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됨)
기타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등

※ 신청자 및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전담기관(경기테크노파크)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